

2003. 10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 제 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3. 10. .

제 출 자 : 김제시장

| | |
|-----|---------|
| 의 안 | 2003-57 |
| 번 호 | |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김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예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9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3) 입법예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안) |
|--|---|
|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 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로서 신채장에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상이등급 ----- 국가유공자,광주민중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중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중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중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p> |

| 현 행 | 개 정(안) |
|--|---|
| <p>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p> <p>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p> <p>4. 이륜자동차</p>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 <p>1.~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